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43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김영호·이해식·강경숙

최민희 · 송재봉 · 박희승

문정복 · 김문수 · 김성환

한민수 · 박지원 · 안태준

강득구 • 박홍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19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함께 궐기하여 반민주적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훼손되고 변질된 헌정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며 사회 정의를 구현한 세계적인 민주혁명임.

아울러 4·19혁명 이후 헌법을 개정함에 이르러 우리 헌법 전문에 도 4·19혁명의 민주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3·1운동과 함께 우리 국민이 계승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4·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그 의의에 걸맞게 4·19혁명일을 국경일로 정하여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2조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4 · 19혁명일: 4월 19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제2조(국경일의 종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2.</u> 4·19혁명일: 4월 19일		
<u>2.</u> ~ <u>5.</u> (생 략)	<u>3.</u> ~ <u>6.</u> (현행 제2호부터 제5		
	호까지와 같음)		